

## 재일한국인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협회 정관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) 명 칭

본회는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협회라 칭한다.

영문으로 Korean Digital Content Entertainment Association in Japan

일문으로 在日韓国人デジタルコンテンツ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協会

약칭으로는 KoCoA 를 병용한다.

#### 제 2 조) 구 성

본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으로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

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다.

#### 제 3 조) 목 적

본회는 일본 및 세계각국의 한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

및 업무협조를 통하여 회원의 번영과 모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4 조) 사 업

본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.

- (1) 회원 상호간의 디지털콘텐츠비즈니스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업무협력
- (2) KoCoA 및 관련기관과의 친목 및 협력 증진
- (3) 국내외 및 재외동포 콘텐츠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
- (4) 일본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 강화 사업
- (5) 주일 주재 디지털콘텐츠 관련 네트워크 강화
- (6) 동종업간에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교류 세미나
- (7) 각종 박람회 및 세미나 참가 지원
- (8) KoCoA 회원명부 발간
- (9) KoCoA 소식 안내 및 일본 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위한 "KoCoA 뉴스레터" 발간
- (10) 회원사간에 유대 강화를 위한 신/망년회 개최

#### 제 5 조) 소재지

본회의 본부는 동경도내에 둔다. 단, 필요에 따라 인근 타 지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## 제 6 조) 규약 및 규정

본 정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2 장 회 원

### 제 7 조) 자격 및 구분

본회의 회원은 입회절차에 따라 등록된 제 2 조에 규정된 해당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으로 칭한다.

회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회원 :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디지털콘텐츠 관련단체로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기업.

### 제 8 조) 입회 및 탈회

(1) 회원의 입회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완료된다.

(2) 회원은 임의로 탈회할 수 있으며 탈회시에는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탈회시 회비 및 기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 9 조) 권리와 의무

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- (1) 회원은 총회에 참가하여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(2) 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포함하는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
- (3) 회비 납부는 입회한 당월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1년치 회비납입을 기본으로 한다.
- (4) 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협회의 회원이 되며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.

#### 제 10 조) 금지행위

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(1) 본국 및 일본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
- (2) 본회를 정치적 및 개인 이득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
- (3)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

(4) 본회의 회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행위

(5) 본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

(6)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
#### 제 11 조) 징 계

회원이 제 9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장기로 이행하지 않거나

제 10 조의 금지행위를 행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 또는

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.

#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#### 제 12 조 ) 조 직

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고문을 두며,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

분과위원회 및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.

#### 제 13 조) 고문 및 자문위원

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

둘 수 있다.

#### 제 14 조) 사 무 국

집행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소수의 상근 또는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.

#### 제 15 조) 구 성

운영위원회는 회장 1 인, 고문, 각 분과회장 및 부회장 등 10 인 이내로 하고 사무국장, 1 인이내로 구성되며, 이들은 운영위원회 임원이 된다.

#### 제 16 조) 직 무

본회는 회장이 소집하며(회장 유고시에는 각 분과회장) 본회 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요사항을 토의 의결하여 집행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본회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.

본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.

단,서면에 의한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.

(1) 임원 추천

(2)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

- (3) 회원의 징계에 대한 심의
- (4) 정관 개정에 대한 심의
- (5) 회원 회비 결정
- (6) 본회 운영에 필요한 분과위원회와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심의 및 각종 규정, 운영세칙의 심의 제정
- (7)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

제 17 조) 임원의 직무

(1) 회장 :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및 본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, 운영임원회 의장이 된다.

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본회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(2) 사무국장 :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집행한다

(3) 고문 : 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보좌한다

(4) 분과 회장 : 각 분과별 운영과 사업 전반에 총괄적인 기획 및 책임을 지며 분과의 방향을 제시한다

(5) 분과 부회장 : 분과회장과 함께 분과별 운영과 사업 전반에 걸친 기획과 책임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한다

#### 제 18 조) 소 집

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..

(1) 정기총회 : 년 1 회 개최하며 임원과 협의 후 회장이 소집한다.

(2) 정기위원회 : 월 1 회 개최하며 임원과 협의 후 회장이 소집한다.

(3) 임시위원회 : 재적이사 1/3 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,

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원과 협의 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

(4) 분과위원회 : 분기당 1 회 개최하며 분과회장과 부회장이 협의 한 후 분과

회장이 소집한다.

#### 제 4 장 고문 및 감사

#### 제 19 조) 선임과 직무

운영위원회에서 고문을 선임하며 고문은 본회의 업무와 감사를 실시한 후

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

#### 제 20 조) 임 기

모든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#### 제 5 장 재 정

#### 제 21 조) 수 입

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,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## 제 22 조) 지 출

본회의 지출은 예산안에 근거하여 집행한다.

#### 제 23 조) 회계연도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#### 제 24 조) 회계보고

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임기 내의 부채

발생시 임기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차기로 이월할 수 없다.

제 25 조) 회계감사

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연 1 회 실시하며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6 장 부 칙

제 26 조) 정관개정

본회의 정관은 운영위원회 심의, 의결,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제 27 조) 관 련

본 정관 및 내규,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 28 조) 효 령

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쳐 승인한 시각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15 年 1 月 1 日 운영위원회 승인

제 29 조) 회 비

재일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협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비 정하는데 있다

(1) 월회비 : 본회의 회원이 부담하는 납입금으로 일반사 1 만엔, 임원사는 2 만엔으로 한다

단, 회계년도 도중에 가입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해당 월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한다.

(2) 납입절차 : 회비는 납입 통지를 받은 후 6 개월 이내에 본회 지정 은행구좌로의 송금방식으로 납입한다.

(3) 면제 : 회비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(4) 체납처리 : 임원 혹은 회원이 회비 납부의무를 6 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그 자격과 권리는 자동 상실된다.

제 30 조) 선거규정

재일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협회 임원선거규정

본 규정은 제일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협회 정관이 정한 회장 및 임원을  
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31 조) 선거관리위원회

본 규정에 따른 선거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 중 1 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
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후 회원 중 2 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하여  
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
#### 제 32 조 선거권자

본회의 회원로서 회비를 완납한 자로 국한한다.

#### 제 33 조) 선거방법

(1) 회 장, 부회장 선거는 직접, 비밀투표로 하며 부재자 투표 및 대리투표는 인정  
하지 않는다.

(2) 1 차 투표시 최고득표자는 의결 정족수 1/3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으로 인  
정되며, 1/3 이상이 되지않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의 2 차 투표를 실시하여  
선출한다.

(3) 당선자 선포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선포한다.

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